

1. 개정이유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및 여객선 운항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계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운항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정비

나.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다.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함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항로사업”을 “공영항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항로사업자”를 “공영항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영항로 운영기관은 연장되는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2. 인력 운용계획

3.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4. 선박 관리계획

5. 이용자 편의 제공계획

6. 그 밖에 공영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3(운항명령의 사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일시휴업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선박 검사나 선박 고장·수리 등으로 인하여 대체 선박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교육”을 “교육다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날부터 1년마다”를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u>보조항로사업</u> 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13조(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 ----- ----- 공 영항로사업-----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u>보조항로사업자</u>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 공영항로사 업자 ----- ----- -----.
<신 설>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영항로 운영기관은 연장되는 위탁계약기

<신 설>

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2. 인력 운용계획
3.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4. 선박 관리계획
5. 이용자 편의 제공계획
6. 그 밖에 공영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의3(운항명령의 사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일시휴업하는 경우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u>교육</u>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u>1년마다 1회 이상</u> 실시하는 교육 ②·③ (생략)	2. 선박안전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선박 검사나 선박 고장·수리 등으로 인하여 대체 선박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 ----- ----- ----- ----- ----- ----- ----- 1. ----- ----- <u>교육</u>다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 <u>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별표 3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8.>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의 종류	선박 보유량		자본금	경영 형태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 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유조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할 것		
		해상풍력특수선박 중 작업자 운반선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그 외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10억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회사일 것
	수산물운송	활·선어운송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냉동어운송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	--	--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해상풍력 특수선박 중 작업자 운반선(CTV, Crew Transfer Vessel)이란 작업자와 소량의 화물을 육상에서 풍력발전 단지로 수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